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-635 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6월 2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(민원처리법 제29조)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원칙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상위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(참조 : 재무과장, ☎ 450-7363, FAX: 3425-1725, E-mail : pcy0227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